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욱 의원 대표발의】



의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경과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3월 9일 이상욱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3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집행기관마다 다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 서식을 통일하여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서식 근거 신설(안 제19조제3항)
- 별표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총괄표 및 위원회별 목차 신설(안 별표 3)
- 별표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서식 신설(안 별표 4)

4. 검토내용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 「지방자치법 제41조의2(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에 대한 처리)」,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감사 또는 조사 보고에 대한 처리)」 규정에 의거 감사 또는 조사 결과 도(道)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가 그 시정을 요구하며 그 시정 요구를 받은 도(道)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 행정사무 감사 시정사항(지적사항)에 대한 일목요연한 처리 결과 총괄표 서식, 구체적인 처리 결과 보고 서식 등이 없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적합성

- 조문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고 받기 위해 동 조례안 제19조 제3항 중 ‘의회’ 를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라 작성하여 의회’ 로 명시함.

-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 서식을 통일하기 위해 별표 3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총괄표 및 처리결과 위원회별 목차 보고 서식과 별표 4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서식을 신설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5. 검토의견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그 처리 결과 보고 서식을 신설하고 구체화하는 등 행정사무감사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